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11. 14. 접수 제88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 17.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토지 중 30/33 지분, E 토지 중 992/2960 지분에 관해 1990. 9.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11. 22.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토지 중 3/33 지분,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68/2960 지분에 관해 1990.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1. 6.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00/29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1991. 9. 18.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91가단21509,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라. 피고는 1995. 11.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해 1991. 6. 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68/2960 지분을 매수했던 것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위해 허위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원고가 요청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했던 것이다. 이는 선행 판결로도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승소했고, 선행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반한다(선행 판결이 통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2) 피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법리

-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등 참조).
-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1) 선행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했다. 위 사실인정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 2)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다투기까지 했다.
- 3) 피고 등이 ‘부산 사하구 D 토지, E 토지 중에서 31.4평을 원고에게 매도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1991. 9. 4. 자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했고, 원고는 위 31.4평이 이 사건 지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36.3평($= 296\text{㎡} \times 1200 / 2960 \div 3.3\text{㎡}$)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위 31.4평이 36.3평의 오기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피고 등 명의의 1991. 8. 자 각서(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도로 36.3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립의 진정을 다투고 있는데,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

5)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199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 피고는 2005년경 부산 사하구청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사용료 청구 및 매수신청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라. 소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우

별지